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9-37호
2019. 6. 4.(화)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차 례

고 시(1)

-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19-74호) ·····1

입법예고(4)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고 제2019-519호) ···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공고 제2019-520호) ··3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고 제2019-521호) ··4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공고 제2019-522호) ··50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74호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5-4호(2015.01.16.), 제2015-59호(2015.07.10.), 제2016-46호(2016.06.30.), 제2017-5호(2017.01.25.), 제2018-113호(2018.08.0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하고,「도시개발법」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1일원

2) 면 적

- 당 초 : 147,699㎡
- 변 경 : 154,593㎡ (증 6,894㎡)
- 변경사유 : 동측 잔여 준공업지역 추가 편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1) 공장이전 나대지의 난개발 방지와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한 원활한 택지 공급 및 주변여건과 조화된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

2)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으로 신탄진 부도심 활성화 도모 및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로 정주환경 개선

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1) 시행자 :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대표이사 김은수

2) 사무소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21번길 624(범천동)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1) 시행기간 : 2015. 01. 16. ~ 2023. 12. 31.

2)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7,699	증) 6,894	154,593	100.0	
주거용지	97,269	증) 6,936	104,205	67.4	
공동주택용지	73,779	-	73,779	47.7	
임대주택용지	23,490	증) 6,936	30,426	19.7	
기반시설용지	50,430	감) 42	50,388	32.6	
공원	27,190	증) 298	27,488	17.8	
공공공지	2,841	감) 1,154	1,687	1.1	
공공청사	1,635	증) 1,409	3,044	2.0	
주차장	1,065	감) 78	987	0.6	구역면적의 0.6% 이상
도로	17,699	감) 517	17,182	11.1	

■ 변경사유 : 동측 구역계 일부 편입으로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변경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 : “별첨1”

아.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이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자.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1) 공람기간 : 고시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재생과 (☎042-608-5102)

3) 공람방법 : 전화문의, 방문열람 등

4) 공람대상 :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차.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147,699	증)6,894	154,593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변 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 147,699㎡ → 154,593㎡ 증) 6,894㎡	◦ 구역 추가 편입으로 신탄진 부도심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147,699	증)6,894	154,59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변 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 147,699㎡ → 154,593㎡ 증) 6,894㎡	◦ 도시개발구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3)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7,699	증) 6,894 (증 : 6,894)	154,593 (6,894)	100.0	
주거지역	소 계	123,725	증) 6,365 (증 : 6,675)	130,090 (6,675)	84.1	
	제2종일반주거지역	14,950	증) 893 (증 : 1,730)	15,843 (1,730)	10.2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775	증) 5,472 (증 : 4,945)	114,247 (4,945)	73.9	
공업지역	소 계	(6,675)	(감 : 6,675)	(-)	-	
	일 반 공 업 지 역	(191)	(감 : 191)	(-)	-	
	준 공 업 지 역	(6,484)	(감 : 6,484)	(-)	-	
녹지지역	소 계	23,974 (219)	증) 310 (증 : 219)	24,503 (219)	15.9	
	자 연 녹 지 지 역	23,974 (219)	증) 310 (증 : 219)	24,503 (219)	15.9	

주 : ( )는 구역외로써 금회 편입 대상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신탄진동 56-4번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310	-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도로 → 공원)
②	신탄진동 100-1번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78	200이하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공동주택 → 도로)
③	신탄진동 100-1번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915	240이하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공공공지 → 공동주택)
④	신탄진동 83-10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730	200이하 (350이하)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구역외 → 공공공지, 주차장, 도로)
⑤	신탄진동 80-7번지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4,754	240이하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구역외 → 공동주택)
⑥	신탄진동 80-7번지 일원	일반공업 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191	240이하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구역외 → 공동주택)
⑦	신탄진동 56-5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219	-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편입(용도지역 변경 없음)(구역외 → 도로)

주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350%이하)는 주차장전용 건축물 계획에 따른 용적률임

4)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변 경	10	신탄진 지구	일반미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금강~상서동	43,013 (187)	3,000 (23)	양측 8	충고제167호 (1988. 8. 9)	( )은 사업지구내
변 경	11	대청 지구	일반미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신탄진역~ 대청로변	12,794 (2,342)	825 (293)	양측 8	충고제167호 (1988. 8. 9)	( )은 사업지구내

○ 용도지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신탄진지구	일반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지구의 세분 변경
11	대청지구	일반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지구의 세분 변경

5) 도시 · 군관리계획(기반시설) 결정(변경)

■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20	28	보조 간선	361	중로 1-217	중로 2-53	일반 도로		2016.06.30	
기정	중로	2	53	15	보조 간선	221	대로 3-120	중로 1-20	일반 도로	석봉 택지	1988.8.8	구역외
기정	중로	1	304	20~23	집산 도로	341	대로 1-75	대로 3-12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09	21	주간선	3,703	대로 3-39	중로 1-20	자동차 전용도로		1997.12.09	구역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04	15	보조 간선	117	대로 1-2	중로 1-109	일반 도로		1997.02.26	구역외
기정	중로	1	305	20	집산 도로	44	대로 3-120	신탄진동 100-1	일반 도로		2016.06.30	
기정	중로	2	678	18	집산 도로	262	대로 3-120	신탄진동 56-2	일반 도로		2016.06.30	
변경	중로	2	678	18	집산 도로	155	대로 3-120	중로 3-297	일반 도로			선형 변경
기정	중로	3	295	12	국지 도로	86	중로 1-305	중로 2-678	일반 도로		2016.06.30	
변경	중로	3	295	12	국지 도로	86	중로 1-305	중로 2-678	일반 도로			가각 변경
신설	중로	3	297	12~13	국지 도로	92	신탄진동 82-2	신탄진동 56-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신탄진 29	6	국지 도로	52	중로 1-304	신탄진동 456-2	일반 도로		2016.06.30	
기정	소로	3	신탄진 30	4	국지 도로	57	중로 2-678	신탄진동 100-1	일반 도로		2016.06.30	
변경	소로	3	신탄진 30	6	국지 도로	57	중로 2-678	신탄진동 100-1	일반 도로			폭원 확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678호선	중로2-678호선	◦ 연장 : 262m → 155m, 감) 107m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중로3-295호선	중로3-295호선	◦ 종점부 가각 변경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종점부 가각 변경
-	중로3-297호선	◦ 연장 : 92m ◦ 폭원 : 12m ~ 13m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신설
소로3-신탄진30호선	소로3-신탄진30호선	◦ 폭원 : 4m → 6m, 증) 2m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폭원확장

나) 주차장(변경)

○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1,065	감)1,065	-	2016.06.30	
신설	-	주차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83-10번지 일원	-	증)987	987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주차장 폐지(A = 1,065㎡)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	주차장	◦ 주차장 신설(A = 987㎡)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신설

■ 공간시설

가) 녹지(변경없음)

▮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녹지	완충녹지	중로1-20~중로2-53 (남한제지 주변)	263	-	263	1986. 9. 22	사업 지구외

나) 공원(변경)

▮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용정	체육 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56-4번지 일원	23,971	증)298	24,269	2016.06.30	
기정	-	대청	가로 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3,219	-	3,219	2016.06.3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용정체육공원	◦ 23,971㎡ → 24,269㎡, 증) 298㎡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면적 증가

다) 공공공지(변경)

▮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	공공공지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1,342	-	1,342	2016.06.30	
폐 지	-	공공공지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1,499	감)1,499	-	2016.06.30	
신 설	-	공공공지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	증)345	345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2	◦ 공공공지 폐지(A = 1,499㎡)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공지 폐지
-	공공공지 2	◦ 공공공지 신설(A = 345㎡)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

■ 공공 · 문화시설

가) 공공청사(변경)

▮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공청사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1,635	감)759	876	2016.06.30	
신설	-	공공청사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	증)911	911		
신설	-	공공청사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	증)913	913		
신설	-	공공청사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	증)344	344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1	◦ 공공청사 변경 - 면적 : 1,635㎡ → 876㎡, 감) 759㎡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청사 면적 변경
-	공공청사 2	◦ 공공청사 신설(A = 911㎡)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청사 면적 신설
-	공공청사 3	◦ 공공청사 신설(A = 913㎡)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청사 면적 신설
-	공공청사 4	◦ 공공청사 신설(A = 344㎡)	◦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청사 면적 신설

카. 기타사항

1)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S = 1 : 1,200)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S = 1 : 1,200)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에서 열람 가능 (http://luris.molit.go.kr)

[별첨1]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계	98필지				201,710.0	154,593.0					
1	신탄진동	55		도	46,331.0	2,034.0	대전광역시	-			
2	신탄진동	56	4	대	24,209.0	24,209.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3	신탄진동	56	21	구	50.0	50.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4	신탄진동	63	2	구	526.0	526.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5	신탄진동	64	4	잡	127.0	127.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6	신탄진동	64	2	구	486.0	486.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7	신탄진동	66	2	구	526.0	526.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8	신탄진동	68	2	구	360.0	360.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9	신탄진동	69	2	구	53.0	53.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10	신탄진동	71	2	구	522.0	522.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11	신탄진동	72	2	구	833.0	833.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2	신탄진동	73	1	구	145.0	145.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13	신탄진동	74	1	구	3.0	3.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14	신탄진동	75	1	구	20.0	20.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15	신탄진동	76	2	구	185.0	185.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16	신탄진동	76	3	대	169.0	169.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17	신탄진동	79	7	구	7.0	7.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18	신탄진동	79	1	구	96.0	96.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19	신탄진동	79	9	구	658.0	658.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20	신탄진동	91	30	대	90.0	90.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21	신탄진동	91	34	대	84.0	84.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22	신탄진동	91	31	대	42.0	42.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23	신탄진동	91	4	도	3.0	0.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신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24	신탄진동	91	32	대	255.0	255.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5	신탄진동	100	1	장	97,597.0	97,597.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26	신탄진동	106	9	대	195.0	195.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27	신탄진동	106	17	대	195.0	195.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28	신탄진동	106	18	대	218.0	218.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29	신탄진동	116	27	대	641.5	641.5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30	신탄진동	125	17	대	124.3	124.3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31	신탄진동	125	3	대	223.1	223.1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32	신탄진동	125	19	대	15.8	15.8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33	신탄진동	125	8	도	41.7	41.7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34	신탄진동	125	9	대	209.3	209.3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35	신탄진동	125	16	대	263.2	263.2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36	신탄진동	125	11	대	373.2	373.2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37	신탄진동	125	5	대	334.5	334.5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8	신탄진동	125	22	대	45.5	45.5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39	신탄진동	125	4	대	193.1	193.1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40	신탄진동	125	7	대	104.5	104.5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41	신탄진동	125	12	대	4,693.3	4,693.3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42	신탄진동	125	10	대	167.3	167.3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43	신탄진동	125	6	대	58.8	58.8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44	신탄진동	125	2	대	86.9	86.9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45	신탄진동	125	1	대	28.2	28.2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46	신탄진동	125	18	대	304.8	304.8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47	신탄진동	398	3	대	180.0	180.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48	신탄진동	398	3	대	704.0	704.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49	신탄진동	398	90	대	254.0	254.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50	신탄진동	398	60	대	78.0	78.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1	신탄진동	398	31	대	154.0	154.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52	신탄진동	398	99	대	74.0	74.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53	신탄진동	398	97	대	182.0	182.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54	신탄진동	398	96	대	177.0	177.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55	신탄진동	398	84	대	2.0	2.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56	신탄진동	398	100	대	598.0	598.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57	신탄진동	398	102	대	20.0	20.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58	신탄진동	398	101	대	2.0	2.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59	신탄진동	398	95	도	71.0	71.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60	신탄진동	398	94	대	185.0	185.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61	신탄진동	398	98	대	149.0	149.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62	신탄진동	398	93	대	175.0	175.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63	신탄진동	454	5	대	83.0	83.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64	신탄진동	454	6	대	635.0	635.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65	신탄진동	454	3	구	225.0	225.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66	신탄진동	454	4	대	23.0	23.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67	신탄진동	455	2	구	182.0	182.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68	신탄진동	455	3	답	598.0	598.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69	신탄진동	456	2	구	23.0	23.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70	신탄진동	456	3	답	459.0	459.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71	신탄진동	457	9	답	73.0	73.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72	신탄진동	458	6	도	76.0	76.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73	신탄진동	458	2	답	1,313.0	1,313.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74	신탄진동	458	7	답	334.0	334.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75	신탄진동	459	4	도	17.0	17.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76	신탄진동	459	2	구	274.0	274.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77	신탄진동	459	3	답	1,094.0	1,094.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78	신탄진동	460	2	구	354.0	354.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79	신탄진동	460	3	전	772.0	772.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80	신탄진동	461	3	전	45.0	45.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81	신탄진동	469	5	구	400.0	400.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82	신탄진동	687	10	대	7.0	7.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83	신탄진동	687	4	도	106.0	106.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84	신탄진동	91	33	도	7.0	7.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85	신탄진동	56	5	도	579.0	551.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86	신탄진동	56	22	구	267.0	267.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87	신탄진동	80	1	구	258.0	258.0	이사영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88	신탄진동	80	2	대	341.0	341.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89	신탄진동	80	5	잡	1,320.0	1,320.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0	신탄진동	80	6	전	648.0	648.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91	신탄진동	80	7	잡	1,606.0	1,606.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92	신탄진동	81	4	도	32.0	32.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93	신탄진동	82	2	도	1,289.0	269.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94	신탄진동	83	10	공	1,334.0	1,334.0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95	신탄진동	687	5	도	393.0	29.0	국토교통부	-			
96	신탄진동	687	6	도	43.0	43.0	국토교통부	-			
97	신탄진동	687	7	도	110.0	110.0	국토교통부	-			
98	신탄진동	687	8	도	86.0	86.0	국토교통부	-			

주 : 연번 85 ~ 98은 금회 편입지번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51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국정연계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행정기구의 정비를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자치행정국 소속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 지적과로 분리하고 안전도시국 소속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단으로 분리 신설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042-608-6044, FAX: 042-608-3811, E-Mail: kdi041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담당자 권동일 (전화: 042-608-60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 지적과”로 한다.

제6조 중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를”을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재생사업단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의정담당주사가”를 “의정팀장이”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업무소관담당주사와”를 “업무소관팀장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공동체 담당이”를 “공동체팀장이”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문화예술정책담당주사가”를 “문화예술정책팀장이”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문화예술정책담당주사로”를 “문화예술정책팀장으로”로 한

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리담당주사가”를 “경리팀장이”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리담당주사”를 “경리팀장”으로 하고 “감사담당주사”를 “감사팀장”으로 하고 “세입관리업무담당주사로”를 “세입관리업무팀장으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 관서란 중 “담당”을 “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①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①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확인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징수확인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확인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공유재산업무 담당 주사가”를 “공유재산업무팀장이”로 한

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담당자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기금업무담당주사”를 “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청소담당주사”를 “청소팀장이”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정책담당주사”를 “복지정책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주사는”을 “보건행정팀장은”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를 “장애인복지팀장이”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성복지담당주사”를 “여성복지팀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아동청소년 담당주사”를 “청소년아동친화팀장이”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아동청소년담당”을 “청소년아동친화팀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담당”을 “안전행정팀장”으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담당주사가”를 “공동주택지원팀장이”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제1항 중 “공동주택담당주사가”를 “공동주택지원팀장이”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공공시설담당주사”를 “공공시설팀장”으로 한다.

㊱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㊲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수담당주사가”를 “하수팀장이”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6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㊳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중 “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팀장”으로 한다.

㊴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진료담당주사”를 “보건행정팀장이”로 한다.

㊵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예방의약담당주사로”를 “감염병관리팀장으로”로 한다.

㊶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를 “국민건강증진업무팀장이”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본청 실·단·국장의 분장사무 (제7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11 ~ p.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수임 기관	비고
총무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동장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다. 특별휴가	같은 조례 제23조		
문 화 체육과	2	송촌 문화의 집 운영·관리	「지방자치법」 제104조	송촌동장	
	3	신탄진 문화의 집 운영·관리	「지방자치법」 제104조	신탄진동장	
에너지 경제과	4	농지원부 작성 · 비치	「농지법」 제49조	동장	
	5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 제50조	동장	
	6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50조	동장	
복 지 정책과	7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	동장	
		가. 대상자 접수			
		나. 욕구 조사			
		다. 사례회의 개최			
		라. 대상자 구분 · 선정			
		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바. 서비스 제공 · 점검 · 종결			
		사. 사후관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교육공동체과,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제4조(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지적과-----.
제6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에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를 둔다.	제6조(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재생사업단을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52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국정연계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행정기구 및 부서 분장사무를 정비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민원봉사과, 지적과, 도시계획과 및 도시재생사업단의 부서장 직급과 부서 분장 사무를 정함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042-608-6044, FAX: 042-608-3811, E-Mail: kdi041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담당자 권동일 (전화: 042-608-60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중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ㆍ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을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ㆍ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시재생사업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주무담당주사를”을 “주무팀장을”로 하고 “주무담당주사가”를 “주무팀장이”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주무담당주사로”를 “주무팀장으로”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주무담당주사로”를 “주무팀장으로”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세입업무담당주사로”를 “세입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관수자란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주무담당주사”를 각각 “주무팀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⑨ 「대전광역시대덕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란 중 “인사담당”을 “인사팀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란 중 “인사담당”을 “인사팀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자란 중 “감사업무담당”을 “감사팀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물품출납원의 “경리담당주사”를 “경리팀장”으로 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의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물품출납원의 “의정업무담당주사”를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물품출납원의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의 “서무담당주사(담당주사가”를 “서무팀장(팀장이”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타목 중 “경리담당주사”를 “경리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제마목 중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제사목 중 “재무업무담당주사, 재무업무담당주사가”를 “재무업무팀장, 재무업무팀장이”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제아목 중 “세입업무담당”을 “세입업무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제자목 중 “서무업무담당”을 “서무업무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제라목 중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를 “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팀장(담당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제마목 중 “재무업무담당주사, 재무업무담당주사가”를

“재무업무팀장, 재무무업무팀장이”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주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6-1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1면)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뒤쪽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갑)의 앞쪽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 주무 담당주사”를 “도시계획과 주무 팀장”로 하고 한다.

제15조제5항 중 “기록물담당주사가”를 “기록물팀장이”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원지적과”를 각각 “민원봉사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민원지적과”를 “지적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표 1]

구 본청 실·단·과장의 분장사무 (제9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10 ~ p.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별지 제2호서식) - 앞면

당 직 근 무 일 지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재
		전결	

20 년 월 일 (요일, 일·숙직)

당직자	▪사령 : 직 성명 ㊞ ▪반장 : 직 성명 ㊞
특이사항	

기관별 당직사항		
기 관 명	당직자 (재택근무자)	당직 신고시간
오 정 동		
대 화 동		
회 덕 동		
비 래 동		
송 촌 동		
중 리 동		
법 1 동		
법 2 동		
신 탄 진 동		
석 봉 동		
덕 암 동		
목 상 동		
보 건 소		
복합문화센터		
신탄진도서관		
안 산 도 서 관		
송 촌 도 서 관		
대덕문화체육관		
대 청 공 원		

당직자 보안점검 실시결과			
부 서 별	이상유무	부 서 별	이상유무
기획홍보실	유·무	여성가족과	유·무
감사평가실	유·무	위 생 과	유·무
새로운대덕추진단	유·무	도시계획과	유·무
총 무 과	유·무	안전총괄과	유·무
교육공동체과	유·무	공원녹지과	유·무
문화체육과	유·무	건 축 과	유·무
회계정보과	유·무	건 설 과	유·무
세 무 과	유·무	교 통 과	유·무
민원봉사과	유·무	도시재생사업단	유·무
지 적 과	유·무	의회사무과	유·무
에너지경제과	유·무	기 타 (대덕구체육회, 대덕구체육회 사무국, 자원봉사센터, 후별관 등)	유·무
기후환경과	유·무		
복지정책과	유·무		
사회복지과	유·무		

※ **당직자 보안점검** : 화재예방, 시건장치 잠금상태, 문서 보안상태 등

C C T V 관 찰 사 항			
관 찰 시 간	이상유무	조 치 결 과	점검자
: ~ :			
: ~ :			
: ~ :			
: ~ :			

열 쇠 관 리 대 장

구 분	년 월 일 보 관 자		년 월 일 지 출 자	
	시 간	성 명	시 간	성 명
구 청 장 실				
부 구 청 장 실				
자치행정국장실				
경제복지국장실				
안전도시국장실				
기 획 홍 보 실				
감 사 평 가 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총 무 과				
교 육 공 동 체 과				
문 화 체 육 과				
회 계 정 보 과				
세 무 과				
민 원 봉 사 과				
지 적 과				
에 너 지 경 제 과				
기 후 환 경 과				
복 지 정 책 과				
사 회 복 지 과				
여 성 가 족 과				
위 생 과				
도 시 계 획 과				
안 전 총 괄 과				
공 원 녹 지 과				
건 축 과				
건 설 과				
교 통 과				
도시재생사업단				
의 회 사 무 과				
자 원 봉 사 센 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교육공동체과장・문화체육과장・회계정보과장·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자치행정국) ----------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제8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안전도시국) ----------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시재생사업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52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 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국정연계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인력 확충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3명”에서 “722명”으로 29명 증원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042-608-6044, FAX: 042-608-3811, E-Mail: kdi041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담당자 권동일 (전화: 042-608-60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93명”을 “7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8명”을 “70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대덕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22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719					
	3급	1	1				
	4급	4	3		1		
	5급	42	23	3	3	1	12
	6급 이하	672					
별정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9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78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722명---------- 1. ----------707명 2.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2조 및 별표 3

○ 공무원 일반직 정원 29명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봉급 최근 3개년 평균 인상률(2.63%) 적용

3. **비용추계 결과** : 2019년 277,146천원 소요

○ 연도별 비용추계표 및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총 비 용		277,146	1,137,741	1,167,663	1,198,373	1,229,890	5,010,813
세 입		-	-	-	-	-	-
세 출		277,146	1,137,741	1,167,663	1,198,373	1,229,890	5,010,813
	인 건 비	277,146	1,137,741	1,167,663	1,198,373	1,229,890	5,010,813
재원조달							
의존재원	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등)		277,146	1,137,741	1,167,663	1,198,373	1,229,890	5,010,813
합 계		277,146	1,137,741	1,167,663	1,198,373	1,229,890	5,010,813

4. **작성자** : 기획홍보실 기획담당 (042-608-6044)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52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 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국정연계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직급・직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관별 직급·직렬 정원 중 일반직 5급 40명→42명, 6급 152명→ 157명, 7급 216명→219명, 8급 196명→206명, 9급 81명→90명 총29명 증원(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042-608-6044, FAX: 042-608-3811, E-Mail: kdi041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담당자 권동일 (전화: 042-608-60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4～p.8)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